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의원 대표발의】



2013. 4.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8호로 2013년 2월 21일 신홍식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3조)
- 나.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작성되는 회의록의 작성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9조)

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주민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에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 안 제9조에 회의록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명시하고,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조사·연구의 의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에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참 고 자 료

1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